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청구된 총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 기준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함을 규정(별표 1의 제1호 바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의 금액은 3천만원으로 본다.

- 1) 업무정지기간 10일 이하인 경우 : 제공자가 해당 사업에서 법 제19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의 2배
- 2)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총 부당금액의 3배
- 3)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 총 부당금액의 4배
- 4)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총 부당금액의 5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영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제공자의 연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공자의 신규영업, 폐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바.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정지기간 10일 이하인 경우 : 법 제19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총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의 2배

2)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3)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4)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2.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단위: 원)
1	10 미만	3,300
2	10 이상 ~ 30 미만	13,100
3	30 이상 ~ 50 미만	26,300
4	50 이상 ~ 70 미만	39,400
5	70 이상 ~ 100 미만	55,900
6	100 이상 ~ 200 미만	72,000
7	200 이상 ~ 300 미만	85,000
8	300 이상 ~ 400 미만	100,000
9	400 이상 ~ 500 미만	118,000
10	500 이상 ~ 600 미만	144,000
11	600 이상 ~ 700 미만	171,000
12	700 이상 ~ 800 미만	197,000
13	800 이상 ~ 900 미만	223,000
14	900 이상 ~ 1,000 미만	250,000
15	1,000 이상	263,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1. 일반기준 가.~마. (생략) <신 설>	[별표 1] 1.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u>바.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u> 1) <u>업무정지기간 10일 이하인 경우 : 법 제19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총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의 2배</u> 2) <u>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부당금액의 3배</u> 3) <u>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u>

2.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표 (생략)	<u>부당금액의 4배</u> <u>4)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 금액의 5배</u> 2.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표 (현행과 같음)
---	---